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

1995. 10. 10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 결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9월 30일

◦ 회부일자 : 1995년 9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95. 10. 1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가.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증개정법률(법률 제4.951호, '95. 7. 26)제24조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준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위원 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 위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내용은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때, 직무상 장애를 입었을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하고

둘째, 보상금 지급 기준은

- ①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 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고
- ③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2항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게 하는 등 2항 3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교육위원이 1항 2항에 해당될 때 1항 2항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2항 3항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토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상해등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과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상해등 보상심의회를 충청북도 교육청에 두어 위원장은 1인, 위원은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중 1인은 도교육청 관리국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교육감이 위촉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위원의 공적인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질병, 상해, 장애, 사망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항의 규정에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12조 2항 규정에 있어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이 사망 또는 자명 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요구되며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없음

5. 도론요지: 없음

6. 수정안 요지: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대행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7. 심사결과: 조례안 제12조 2항 규정중 "지명하는"을 "지명한"으로 자구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함

8. 조례안: 별첨

9. 수정안조문대비표: 별첨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5. 10. 10

제안자 : 이길하의원외 6인

1. 수정이유

안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장의 사고 시 직무대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 골자

자구수정 "지명하는" ————— "지명한" (안 제12조 2항)